

	<h2 style="margin: 0;">공간배정에 관한 규칙</h2>	규정번호	3-1-56	
		제정일자	2020.03.01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간”이라 함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내에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 및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, 이는 본 대학이 관리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.
2. “공간 배정”이라 함은 공간의 명칭, 용도 및 면적 등 필요 공간의 사용을 승인·지정하거나 기 배정된 공간을 새로운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공간 회수”라 함은 기존 공간의 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공간 배정 원칙)** 공간 배정 및 공간 회수는 공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공간 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학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간 배정 및 공간 회수를 할 수 있다.
- ② 공간 배정 후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완료 후 3년 이내에 공간 회수를 할 수 없다. 단, 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교원의 연구실은 교원 담당 부서에서 따로 배정한다.

**제4조(공간관리위원회)**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처장 및 기획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본 대학 내에 공간 배정 및 공간 회수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규칙의 개정)** 본 규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## 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